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및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건설교통부 제2007-180호
- 예고기간 : 2007. 5. 10~2007. 5. 30
- 담당부처 : 건설지원팀(02-503-7326)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www.moct.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관리법」이 일부개정(2007. 4. 6 법률 제8336호)됨에 따라 건설기계수급계획 수립,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비도로용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실시 등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 하며,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의 기준을 조문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처리하도록 근거 마련
- 나. 건설기계수급계획 수립, 수급조절을 위한 위원회 절차, 구성,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함
- 다.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완화함
- 라.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타워크레인을 제작·조립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여타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그 형식을 신고하도록 함
-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 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건설기계사업자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폐기되는 건설기계의 장치중 도로주행용으로 제작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에 준하여 폐기 또는 재활용 하도록 함
- 나.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이행사실 증명서류를 해당관청에 제출토록하고, 말소등록 후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및 폐기 요청 한 경우 해당자가 해당 관청에 통보토록 함
- 다.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의 기준 별표 6을 조문화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 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에 대하여 도로법에서 정하는 중량 및 크기가 이상일때에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함
- 마. 건설기계의 적재함 및 버킷 등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할 수 없도록 함
- 바.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의 변경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고자 함
- 사.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범위에 소형공기압축기 및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이동식을 말하며, 배송관을 이용한 고압용은 제외)를 포함토록 함
- 아.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하는 타워크레인 및 비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유효기간을 정함
- 자.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과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타워크레인을 포함함
- 차.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하여 신고하던 것을 등록하도록 하고 기준을 강화함
- 카.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교통사고 및 음주 등에 대한 사고시면허의 최소·정지 처분기준을 정함
- 타. 건설기계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설기계의 불법·위장수출 등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기준을 정함

◇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가. 건설기계의 형식 및 규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공통용어 등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 나.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을 기술하고, 타워크레인은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크레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 작업장치에 대한 구조와 성능기준 등이 분리 표기되어 있는 안전기준에 대하여 건설기계 기종별로 통합하여 기술함
- 라. 안전띠 설치는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한하나, 지게차에 대하여는 설치를 의무화 함
- 마.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점등 및 조명장치(전조등, 차폭등, 변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면반사등)에 대한 색상 및 위치 등을 규정함
- 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최고속도(90km/h)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수산자원관리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 해양수산부 제2007-140호
- 예고기간 : 2007. 5. 31~2007. 6. 20
- 담당부처 : 수산자원회복팀(02-3474-6919)
- 전문참고 : 해양수산부(www.momaf.go.kr)

◎ 개정이유

동북아 EEZ체제 개편 등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대응하고, 수산자원회복계획 추진 등 체계적으로 수산자원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마련 등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해양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과학적인 조사·평가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생산자원을 유지하여 어업의 발전에 기여함

◎ 주요내용

- 가. 해양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평가와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생산자원을 유지함으로써 어업의 발전에 기여함
- 나. 어업인 또는 어업인단체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으면 협약 추진을 위한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 방지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함
-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
-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체계적·과학적 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함.
-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저히 수산자원이 감소하거나 또는 고갈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종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시행함
- 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장이나 체중 및 특정어종의 암컷과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안됨
- 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음
-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구역과 조업금지지역을 정할 수 있음
-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본계획 및 회복계획에서 휴어기를 정하는 경우 또는 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휴어기를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 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 계획에 대하여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함
- 하.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투자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성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부령 : 건설교통부 제559호
- 공포일자 : 2007. 5.29
- 담당부처 : 법무담당관실(02-2110-8145)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www.moct.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시 등록기관의 검토사항이 기술인력 및 진단장비의 확보 여부 등이므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 : 정보통신부 제2007-37호
- 예고기간 : 2007. 5. 18 ~ 2007. 6. 7
- 담당부처 :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 총괄팀
- 전문참고 : 정보통신부 (www.mic.go.kr)

◎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 제8198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법률 제8324호, 2007. 3.29 공포, 2007. 9.30 시행 및 법률 제8425호, 2007. 5.11 공포, 2007.11.12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사업의 법률로 상향 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이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사업정지처분기간 개선

다.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금액 산정시 참작사유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과징금 산정방법의 법률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라.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등 비용 감면사유의 법률로 상향 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불법통신 등의 규정이 신설(법률 제8289호, 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됨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령 : 정보통신부 제2007-38호
- 예고기간 : 2007. 5. 18~2007. 6. 7
- 담당부처 :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 총괄팀
- 전문참고 : 정보통신부(www.mic.go.kr)

◎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 제8324호, 2007. 3.29 공포, 2007. 9.30 시행 및 법률 제8425호, 2007. 5.11. 공포, 2007.11.12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통신망의 광대역화, All-IP화, 역무간 융합과 경쟁 진행이라는 통신 기술과 시장의 진화에 맞추어 현재의 열거식 역무분류제도를 서비스별 구분과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역무를 통합하며, 신속한 해양 범죄 및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긴급특수번호인 122번으로 착신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타 현행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현행 기간통신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의 3개역무로 통합하는 등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의 개선
- 나. 인가대상이 되는 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및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외의 설비 매각시 신고절차 규정
- 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의 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규정 삭제
- 라.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 서비스 이용자보호 강화 규정 마련
- 마. 해양긴급특수번호 122번으로 착신되는 송신인 전화번호 호 제공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 : 건설교통부 제 2007-192호
- 예고기간 : 2007. 5. 17 ~ 2007. 6. 7
- 담당부처 : 분양가제도개선팀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 (www.moct.go.kr)

◎ 개정이유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 공시 제도의 확대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7.4. 2)하여 공포(2007. 4.20)됨에 따라 이의시행을 위하여 택지의 감정평가 세부절차를 정하고, 분양가 공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시에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설립인가 당시의 건설예정세대수의 5분의4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

- 고, 2년 이내에 사업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시 1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도입하고, 소형주택소유자라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청약당첨자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
- 다.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조합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되, 경·공매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법 공포일(2007. 4. 20) 이후 매입한 경우는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감정평가액 및 가산비용의 합)의 120%이내로 정하고, 법 공포일(2007. 4. 20) 이전의 경우는 실제 매입가 전액으로 정함
- 마.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기재가격을 추가함
- 바. 분양가격의 공시지역을 수도권외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고,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 및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 상승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 사. 법 제38조의4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임무를 분양가격 산정 및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및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심사로 규정함
- 아.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10인중 6인 이상을 안 제42조의 7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안건과 관련된 용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또는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심의의 결에서 제외하도록 함
- 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30

- 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도록 함
- 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지료의 산정기준은 택지공급 가격에 사업주체의 자본비용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 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법 제38조의5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환매기간은 20년으로 함
- 파.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과 관련하여 수도권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0년,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7년을 적용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7년,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5년을 적용함.
- 하. 수도권외 지역의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과 관련하여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5년,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3년을 적용하고, 공공택지외의 택지중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은 충청권(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의 경우 3년, 기타 지역은 1년을 적용하며, 공공택지 외의 택지중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주택은 6개월을 적용함
- 거. 「건축법」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너. 관리사무소장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으로 한다.
- 더.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을 정하도록 하고,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사항은 결산서인 요약 대표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도록 함
- 러. 범정부적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것으로 고령자들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대출상품(역모기지)에 대해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환경보건법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 환경부 제 2007-192호
- 예고기간 : 2007. 5. 15 ~ 2007. 6. 4
- 담당부처 : 환경보건정책과
- 전문참고 : 환경부 (www.me.go.kr)

◎ 개정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영향과 질환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체인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에 중심을 둔 환경보건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체계적인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환경보건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함
- 나.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 등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해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적용 및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환경보건위원회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적용의 제한 또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다. 환경기준 설정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기반한 통합적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애계 환경기준 유지·준수의무를 부여함
- 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평가항목에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 마. 환경관련 질환 및 환경성질환 관련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으로 건강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함
- 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관리를 하고,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사. 유독물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유독물부담금을 부과하고, 환경요인에 의한 국민건강 및 생태계 위해를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설치함
- 아. 환경관련 질환의 조사·예방·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환경보건센터 설치 및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지정·운영하고, 환경보건에 관한 인식 증진을 위해 환경보건 협회를 설치함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 제8406호
- 공포일자 : 2007. 4. 27
- 담당부처 : 법무담당관실(02-503-9708)
- 전문참고 : 노동부(www.molab.go.kr)

◎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실시(안 제15조의2 신설)
- (1) 한번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산업수요 및 기술변화와 무관하게 그 효력이 평생 지속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능력과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2)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관련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검정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검정업무 위탁의 취소 등(안 제24조의2 신설)

-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대한 검정업무의 위탁을 확대하였으나, 검정업무 위탁의 취소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음
- (2) 수탁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거나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주무부장관이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3) 검정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검정의 질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안 제24조의3 신설)

- (1) 검정기관이 낙후된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를 임차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함에 따라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기술능력과 차이가 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2) 노동부장관 등은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검정 시설·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 등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 민간기관의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검정 시설·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기사업법(안전관리분야) 유권해석 사례

문의 | 민원봉사실 02-2182-0741~3

01

- 한전계약용량 25kW, 비상용발전기 10kW미만을 가스충전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비상발전기 용량표시가 2가지로 되어 있을 때 어느 용량을 전기설비용량으로 사용하는지



☞ 비상용발전기 10kW미만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일반용전기설비이나,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2호 라목에서 정한 위험시설에 설치된 용량 20kW이상의 전기설비(비상발전기 포함)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귀 충전소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비상용발전기 용량표시는 연속출력과 비상출력으로 표시되는데, 연속출력으로 표시된 용량을 주로 사용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3)

02

수전설비 500kW 공장이 부도로 인해 경매가 진행중으로 임대업체가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업체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지 및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전기사업법에 의한 고발여부와 전기사용 중단 가능여부에 대하여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하고는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라도 임대업체가 법적인 점유자의 지위라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104조의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벌칙은 제3자(한국전력기술인협회, 행정기관 등)의 고발여부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임대업체가 점유자의 지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자가용전기설비를 운용한다면 전기사용 중단 등의 조치는 불가하며, 경매완료 후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업체간에 법적관계는 관련법(민법, 상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5)

03

주상복합아파트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번영회)를 동일한 관리업체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우

- 위탁관리업체를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아파트와 상가를 선임할 수 있는지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유자”라 함은 전세권, 임대차등으로 물건의 점유권이 있는 자를 말하므로 위탁관리업체는 점유자로 볼 수 없습니다.

○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 마다 선임하여 상시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장”이라 함은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하나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상가는 상가번영회 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도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8)

04

전기안전관리대행업과 동시에 동일법인에 전문감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법인의 대표자가 전기안전관리 또는 감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이행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며, 동일 법인에 감리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감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동일법인은 전문감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을 추가로 갖추어 감리업을 등록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3.25)